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4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이재정・박지원・민병덕

백혜련 • 정태호 • 김현정

이병진 · 최기상 · 복기왕

김병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기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 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겸직 심사가 무기한 이뤄지지 않게 됨. 이는 심 사 기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추후 의원 겸직이 불허될 경우, 의원이 직 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한편,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그러나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국회사무처의 '간사' 표기도 Vice Chairperson, '부위원장'으로 통용되기에 간사라는 번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안 제29조제4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때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등). 또한 '간사'를 역할에 적합한 명칭인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2항 등).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가지는"을 "가지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결과를 해당"을 "결과를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겸하고"를 "당선 전부터 겸하고"로한다.

제29조의2제3항 중 "종사하게 된"을 "종사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전단 중 "결과를 해당"을 "결과를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사하고"를 "당선 전부터 종사하고"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의"를 "부위원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단서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단서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9조의2 단서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간사로"를 "부위원장으로"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간사와"를 각각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84조제3항 후단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86조제1항 후단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121조제4항 후단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의 겸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진 의원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은 제29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간사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은 이 법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이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부위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부위원장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③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②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5조제 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위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부위원장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은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되는 「인사청문회법」 시행 당시 작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④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부위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부위원장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⑤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간사인 위원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본다.

⑥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간사인 위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위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부위원장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겸직 금지) ①・② (생	제29조(겸직 금지)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③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	
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u>가지는</u> 경	<u>가지려는</u>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	
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4
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	
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	
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u>결과</u>	결과를 의
<u>를 해당</u>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원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	에 해당
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청해고 가으)

- ⑤ (생략)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u>겸하</u> 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 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 ⑦・⑧ (생 략)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 ①·② (생 략)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 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u>종사하게</u>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당선	
<u> </u>	
선가의 집이고	
⑦·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사하려는	
4)	
결과를 의	
원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u>에 해당</u>	

- ⑤ (생략)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 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 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 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 (2)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 -----부위원장과----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 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 -----부위원장과---하여 정한다.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 제50조(부위원장) ① ------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부위원장-----.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 ② 부위원장은-----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⑤ (현행과 같음)

전부터 종사하고-----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현행

(6) -----

과 같음)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u>간사의</u>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생 략)
 -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
 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
 성할 때 <u>간사와</u> 합의하여 90일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
 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u>장이</u>
<u>부위원장의</u>
 ⑤
<u>부위원장</u>
 부위원장
②
<u>부위원장과</u>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다만,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 의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원이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u>간사와</u>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 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 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 ⑩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저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

<u></u> 부위원장과
5
<u>부위원장과</u>
⑥ ~ ⑩ (현행과 같음)
세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부위원장과</u>

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 ⑩ (생 략)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 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한다.

<u>.</u>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
<u>부위원장과</u>
-1) CO Z (O) O) O) HI O) (1)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
부위
 원장과
<u> </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 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 날인한다. ④ (생략)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 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 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u> 부위원장 <u>으로</u>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위원장
<u>o]</u>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부위원장과
·
부위원장과
111207

- 1. 2. (생략)
- ②·③ (생 략)
-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② (생 략)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 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 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 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 ④ ~ ⑦ (생 략)
-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등	Į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
	_
	_
	_
	_
	_
	_
<u>부위원장과</u>	_
	_
	_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	_
	_
	_
	_
H 이 이 기 기	_
<u>부위원장과</u>	_
	_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합합하여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⑤ (생 략)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7 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 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 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 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 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③	
		·위
	원장과	
	,	
-1]	④·⑤ (현행과 같음)	$\hat{\Box}$
제	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뀨
	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4)	
		-부
		- 1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② (생 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 또는 <u>간사와</u> 협의하여 이 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 ⑥ (생 략)

위원장과
⑤ (현행과 같음)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3
<u></u> 부위원장과

④ ~ ⑥ (현행과 같음)